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	--

제출일자 2018. . .

제 출 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2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구미시립예술단 중 “구미시립청소년관악합주단” 명칭은 단원의 범위가 청소년으로 한정되고 관악기로 악기가 제한되어 있어, 단원 확대 및 다양한 악기를 활용한 예술단 운영을 위해 그 명칭을 “구미시립관현악단”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2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구미시립청소년관악합주단”을 각각 “구미시립관현악단”으로 수정함.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구미시립청소년관악합주단”을 각각 “구미시립관현악단”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구성) ① (생략)	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예술단에는 다음 각 호의 단을 둔다.	②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u>구미시립청소년관악합주단</u> : 지휘자 1명과 단원 80명 이내	5. <u>구미시립관현악단</u> : ----- -----
③ 다음 각 호의 일반단원은 해당 연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구미시립청소년관악합주단</u> : 10세부터 22세까지	2. <u>구미시립관현악단</u> : ----- -----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구미시립예술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구미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단장은 문화예술회관장이 된다.

② 예술단에는 다음 각 호의 단을 둔다.

1. 구미시립합창단: 지휘자 1명과 단원 60명 이내
2. 구미시립무용단: 현대무용 · 한국무용 · 발레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안무자 각 1명과 단원 80명 이내
3. 구미시립연극단: 연출자 1명과 단원 30명 이내
4. 구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1명과 단원 100명 이내
5. 구미시립관현악단: 지휘자 1명과 단원 80명 이내

③ 다음 각 호의 일반단원은 해당 연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구미시립소년소녀합창단: 9세부터 18세까지

2. 구미시립관현악단: 10세부터 22세까지

제3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총괄하고 단원 등을 지휘·감독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단의 지휘자, 안무자 및 연출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각 단을 지휘한다.

제4조(단원 등의 구분)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단(이하 “각 단”이라 한다)의 지휘자, 안무자, 연출자 및 단원(이하 “단원 등”이라 한다)은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상임단원 등: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근무하는 자

2. 비상임단원 등: 제1호 이외의 자

제5조(단원 등의 위촉기간) ① 단원 등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 등은 정기평정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재위촉하고 정기평정은 실기 및 근무평정으로 한다.

제6조(단원 등의 해촉) 시장은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 등을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4. 상임단원 등으로서 단장의 승인 없이 자체 공연 외의 다른 공연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경우

5. 예술인으로서의 품위와 권위,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6. 각 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7.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8. 기량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연습과 공연활동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제7조(단원 등의 복무) ① 상임단원 등은 시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그 밖에 단원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전형방법) ① 단원 등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거주자를 우선하고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임시단원 등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개전형은 서류전형, 실기, 면접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단장의 추천에 따라 구미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9조(결격사유) 시장은 단원 등이 되고자 하는 자가 제6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할 수 없다.

제10조(전형위원) ① 단원 등을 위촉할 때의 전형, 정기평정, 호봉승급 등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각 단별로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각 단별로 3명 이상 6명 이내로 하고, 해당분야에 덕망과 식

건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해당 안건의 심사가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이 경우 전형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해당 단에 소속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예술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구미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예술회관장이 되며, 위원은 문화관광담당관, 각 단의 지휘자·안무자·연출자와 그 밖에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각 단의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
2. 단원 등의 전형 및 평정 계획에 관한 사항
3. 단원 등의 실비액 결정 및 입장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예술단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연기획담당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예산)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계연도마다 시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금관리) 예술단의 육성을 위하여 교부되는 교부금, 보조금, 성금 및 공연수입금은 예술단의 진흥기금으로 하여 따로 특별회계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제21조(보수 및 실비변상) ① 상임단원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지급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단원 등에게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과 전형위원에게는 「구미시각중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일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입장료) ① 예술단 공연의 입장료는 유료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입장료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③ 유료입장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무료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 유료입장권의 판매를 위탁할 때에는 입장권 판매총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입장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 위원인 자에 대하여는 잔여임기동안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예술단 단원 등의 위촉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예술단 단원 등에 대하여는 잔여위촉기간동안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